

4.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7-가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7가.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당사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제1항에 추가하여,¹

- 가. 제7가.5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한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가-가(전문직 서비스 및 전문직 자격 인정), 부속서 7가-나(특급배달 서비스) 및 부속서 7가-다(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부속서 7가-라(국내 규제), 부속서 7가-마(한국의 추가적 약속)를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7나장(투자)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것으로서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²

나. 부속서 7가-마(한국의 추가적 약속)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다. 부속서 7가-라(국내 규제)는 다음에도 적용된다.

1) 2목을 조건으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2) 부속서 7가-라의 제9조(비서비스 활동의 승인)에 대해서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 서비스 공급을 제외한, 적용대상투자 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라. 부속서 7가-나(특급배달 서비스)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특 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 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마. 부속서 7가-다(국제 해상운송 서비스)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것을 포함하 여,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 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7라.2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역 내 금융기관(제7라.2조에 정의된 대로)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 투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가호 및 제2항다호가 적용된다.

² 제7가.5조가 한국 영역에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7나.3조(다른 장과의 관계), 제15.8조의2(일반적 예외) 및 제15.9조(안보 예외)에도 불구하고, 제7나.18조(안보 예외), 제7나.19조(일반적 예외),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7나-다(투자심사)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나. 정부조달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라. 연안해상운송 서비스, 그리고

마.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4.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장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나.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라. 특수 항공 서비스

마. 공항 운영 서비스, 그리고

바. 지상 조업 서비스

6. 이 장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양자, 복수국 간 또는 다자 항공 서비스 협정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데 항공 서비스 협정이 우선한다.

7. 양 당사국이 이 협정 및 양자, 복수국 간 또는 다자 항공 서비스 협정에 따라 같은 의무를 가진 경우, 당사국은 다른 협정의 모든 분쟁해결절차가 소진된 후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제7가.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공항 운영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영국 국왕의 정부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제7나.2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 및 기업의 지점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³ 또는

나. 자신의 선박이 한국 또는 영국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한국 또는 영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한국 또는 영국 밖에 설립되고 각각 한국 또는 영국의 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해운회사

기준이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지상 조업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대리·관리 및 감독, 여객 취급, 수하물 취급, 램프 서비스, 음식 준비를 제외한

³ 기업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그 당사국 내 기업의 관련 상황에 대한 사안별 종합 검토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케이터링, 항공 화물 및 우편물 취급, 항공기 연료 공급, 항공기 정비 및 청소, 육상 운송, 그리고 비행 운영·승무원 관리 및 비행 계획. 지상 조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체 처리, 보안, 라인 정비, 항공기 보수 및 유지, 또는 제빙 시설, 연료 배급 시스템, 수하물 취급 시스템 및 공항 내 고정 교통 시스템과 같은 필수적인 중앙 집중식 공항 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또는
-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자국의 법에 따른 한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 나. 영국의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영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영국의 경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스를 말하고, 한국의 경우 지역정부는 적용 가능하지 않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

지 않는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어떠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리고

특수 항공 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비행 훈련,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 강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운반과 같은, 상품 또는 승객의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상업적 운영,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제7가.3조

내국민 대우⁴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제7가.4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가.3조 또는 제7가.4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서비스들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7가.5조

시장접근

당사국은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⁵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 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제7가.6조

현지주재

⁵ 가호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7가.7조 비합치 조치

1. 제7가.3조부터 제7가.6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 이 제7가.3조, 제7가.4조, 제7가.5조, 또는 제7가.6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7가.3조부터 제7가.6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7가.8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당사국의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 인정은 관련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7가.4조 또는 제7나.6조(최혜국 대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인정을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다른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가.9조

지불 및 송금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그러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⁶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금융 규제 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7가.10조

혜택의 부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이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7가.11조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의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1. 제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다.⁷
2.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는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 12개월 이내, 그리고 그 후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대로 회합한다.
3.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는
 - 가. 이 장, 제7나장(투자), 제7라장(금융서비스), 제7다장(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 제7마장(통신), 그리고 제7바장(디지털 무역)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점검, 감독 및 교환한다.
 - 나. 가호에 명시된 장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이견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다. 위원회의 활동을 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 라. 무역위원회에 의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에게 다시 보고한다.
4.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는
 - 가.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나. 작업반의 설치 또는 해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무역위원회에 권고를 할 수 있다.
 - 다.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⁷ 부속서 7라-다(금융서비스 작업반)에 명시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의 대표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것이다.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한 제3항가호에 언급된 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부속서 7가-가
전문직 서비스 및 전문직 자격 인정

7가-가.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문직 자격이란 전문 자격 또는 전문직 경력에 대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격을 말한다.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고등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 경력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¹

제7가-가.2조
전문직 자격 인정에 대한 대화

1. 각 당사국은 전문직 자격 인정에 대한 대화를 수립할 때 상호 관심이 존재할 수 있는 자국 영역의 전문직 서비스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자국의 관련 기관과도 협의할 수 있다.²
2. 관련 기관 간 상호 관심이 확인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고 상호 관심이 있는 각자의 분야를 담당하는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관련 기관과 전문직 자격 인정에 대하여 대화를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¹ 영국의 경우, 종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부여하거나 제한할 권한을 가진 관련 협회 또는 조직에 의해서도 부여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² 영국의 경우, 종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국이 자체적으로 부여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전문직에 대하여, 영국은 종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할 권한을 가진 관련 협회 또는 조직과도 협의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대화는 상호 인정을 포함하여 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7가-나

특급배달 서비스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특급배달 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급배달 서비스는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¹

2.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우편 서비스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밖의 특급배달 서비스를 공급할 때 직접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하는 경우, 그 공급자가 제7가.3조(내국민 대우), 제7가.4조(최혜국 대우), 제7가.5조(시장접근), 제7나.4조(시장접근), 제7나.5조(내국민 대우), 제7나.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8조(지정 독점)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5.1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또한 특급배달 서비스에 대한 GATS 제8조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²

3. 각 당사국은 독점 우편 서비스로부터 도출된 수익이 자국의 또는 그 밖의 경쟁적 공급자의 특급배달 서비스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자국의 의도를 확인한다.³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이 장의 적용범위 밖의 조치, 또는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의 당사국의 유보목록 중 유보항목을 이유로 제2항에 기재된 조항들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운송 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급배달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영국의 경우, 「2011년 우편서비스법」 제3부 및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규정에 규정된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포함되는 서비스, 그리고 나. 한국의 경우, 「우편법」에 따라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 다만, 「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상업서류의 수집, 처리 및 배달은 포함한다.

² 제2항 또는 제11.8조(지정 독점) 중 어떠한 것도 민간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우편 서비스 독점 공급자의 우편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당사국에 기존의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한국 우정당국이 어떠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부속서 7가-다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1. 이 부속서는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국제 해상운송**은 단일 운송서류상에서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을 사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문건간 운송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로 다른 운송 방식 제공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국제 해상운송에서 양 당사국 간 기존의 자유화의 수준에 비추어,
 - 가. 양 당사국은 상업적으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국제 해운시장 및 무역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 나. 각 당사국은 특히,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 통관 시설, 그리고 접안과 선적 및 하역을 위한 시설의 할당뿐만 아니라 항구에의 접근, 항구의 기반시설 및 해상보조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운영하는 선박에 자국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4.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양 당사국은
 - 가. 건화물, 액체화물 및 정기선 무역을 포함하여,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하여 제3자와의 미래 양자협정에서 화물공유약정을 도입하지 않으며, 이전의 양자협정에 화물공유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화물공유약정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 나.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 해상운송에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 및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그 밖의 장벽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하는 것을 자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또는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관계없이, 불리하지 않은 설립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 해운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설립하도록 허용한다. 이 항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이라는 이유로 제7나.5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7나.6조(최혜국 대우)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아닌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 해상운송 공급자에게 항구에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도선

나. 예선 지원

다. 식량 공급

라. 연료 공급 및 급수

마.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바. 선석배정

사. 항행 원조, 그리고

아.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 비상보수시설,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를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서비스

부속서 7가-라
국내 규제

7가-라.1조
적용범위

1. 이 부속서는 면허 요건 및 절차, 자격 요건 및 절차, 또는 기술표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부속서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부속서 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이라는 이유로 제7가.3조(내국민 대우), 제7가.5조(시장접근), 제7가.6조(현지주재), 제7나.4조(시장접근) 또는 제7나.5조(내국민 대우)에 따른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치의 비합치 측면, 또는
 - 나. 부속서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이라는 이유로 제7가.3조(내국민 대우), 제7가.5조(시장접근), 제7가.6조(현지주재), 제7나.4조(시장접근) 또는 제7나.5조(내국민 대우)에 따른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치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과 규정을 도입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7가-라.2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승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나호를 조건으로, 면허 요건, 자격 요건 또는 기술표준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공

급에 대한 허가

- 나. 제7가-라.9조에 대하여, 면허 요건, 자격 요건 또는 기술표준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서 발생하는, 적용대상투자를 통한 경제 활동 추구에 대한 허가

제7가-라.3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운영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제7가-라.4조

조치의 개발

1. 당사국이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조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한다.¹

나. 절차가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다. 절차는 그 자체로 요건의 충족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그 조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²

¹ 이러한 기준은 보건 및 환경 요건과 같은 당사국의 규제 요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각 기준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²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차등 대우, 그리고 양 당사국에 의한 남녀 간 사실상 평등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임시 특별 조치의 채택은 이 호의 목적상 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2. 당사국이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승인의 취득, 유지 또는 갱신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권한 있는 당국이 자신의 평가 권한을 자의적인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고 그 요건이 아래와 같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을 것

나. 공정할 것

다. 사전에 공개될 것, 그리고

라. 쉽게 접근 가능할 것

제7가-라.5조 신청의 제출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인이 각 승인 신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을 접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피한다. 서비스가 복수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복수의 승인 신청이 요구될 수 있다.

제7가-라.6조 신청 기간

당사국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³ 특정 신청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³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의 공식 근무시간과 근무일 외에 신청의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제7가-라.7조
전자 신청과 사본의 수용

당사국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부터의 것을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신청이 완료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본 문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원본 문서 대신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제7가-라.8조
신청의 처리

1. 당사국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확정적 또는 예시적 기간을 사전에 공표한다.
- 나.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서면⁴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과도한 지체 없이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한 신청의 완료를 확인한다.⁵

⁴ 나호 및 라호에서 “서면으로”에 대한 언급은 전자적 형식을 포함한다.

⁵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유로 인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⁶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을 보장한다.

- 1) 신청의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진다.⁷

마.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 1) 신청이 불완전함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 2)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이 불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이유에 대하여 달리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 3) 신청인에게 신청의 결함을 보완할 기회⁸를 제공한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실행 가능하지 않고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바.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자체 발의로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거부 사유와 적용 가능한 경우 신청의 재제출 절차를 신

⁶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이 “처리를 위하여 완료되었다” 고 간주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가 특정한 형식으로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⁷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제출일부터 특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를 나타낸다는 것을, 공표된 조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림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⁸ 이 기회는 권한 있는 당국에 마감기한 연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청인에게 알린다. 신청인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근거만으로 다른 신청⁹을 제출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이 일단 부여되면 그 승인이 적용 가능한 조건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장할 것을 보장한다.¹⁰

제7가-라.9조 비서비스 활동의 승인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외에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승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신청에 관련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제7가-라.10조 수수료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하는 승인 수수료¹¹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조치에 규정된 권한에 기초하고,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승인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노력

⁹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신청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¹⁰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유로 인한 지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¹¹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불,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다.

제7가-라.11조

시험

1. 당사국이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리적으로 빈번한 간격으로 그 시험의 일정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그 시험에 대한 응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2. 당사국이 승인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자적 형식의 요청을 수용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과정의 그 밖의 측면에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제7가-라.12조

독립성

당사국이 승인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결정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도록 보장한다.¹²

제7가-라.13조

공표 및 이용 가능한 정보

1. 당사국이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 승인의 취득, 유지, 개정 및 갱신을

¹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특정한 행정 조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의 운영을 지칭한다.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¹³한다. 그러한 정보는 존재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
- 나. 요건 및 절차
- 다. 수수료
- 라. 기술표준
- 마. 신청에 관한 결정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를 위한 절차
- 바. 면허 또는 자격 조건의 준수를 점검하거나 집행하기 위한 절차
- 사. 공청회 또는 의견을 통한 것과 같은 공공참여를 위한 기회
- 아. 신청의 처리를 위한 확정적 또는 예시적 기간, 그리고
- 자. 승인의 기간

2.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응답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가-라.14조

기술표준

각 당사국은 기술표준을 채택할 때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기술표준을 개발하도록 지정된, 관련 국제기구

¹³ 이 조의 목적상, “공표”란 관보와 같은 공식 간행물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각 당사국은 전자 간행물을 단일 포털에 통합하도록 권장된다.

¹⁴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7가-라.15조

발효 전 의견 제시 기회

1. 각 당사국¹⁵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자국의 법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사전에 다음을 공표한다.

가. 이 부속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법과 규정, 또는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자신의 이익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지 여부 및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가능한 새로운 법 또는 규정에 관한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문서

2.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자국의 법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에 제1항을 적용하도록 장려된다.

3.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자국의 법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및 다른 쪽 당사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그러한 제안된 조치나 문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4.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자국의 법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각 당사국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¹⁶

¹⁴ “관련 국제기구”란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¹⁵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 당사국이 특정 조치의 채택 전 이해관계인 및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하기 위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1항에 규정된 대안은 상이한 법 체계를 반영함을 인정한다.

¹⁶ 이 규정은 승인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최종 결정과 무관하다.

5. 제1항가호에 언급된 법 또는 규정을 공표할 때 또는 그러한 공표 전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자국의 법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당사국은 그 법 또는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도록 장려된다.

6.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제1항가호에 언급된 법 또는 규정의 문안 공표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날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노력한다.

제7가-라.16조

문의처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관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부속서 7가-마 한국의 추가적 약속

이 부속서의 목적상, 아래의 약속은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의 자국의 유보목록에도 불구하고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한국의 추가적 약속을 적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CPC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o. 77, 1991년 발간 CPC Prov에 규정된 중앙상품분류를 말한다.

가. 법률 서비스 (CPC 861*)

1.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된다.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거나 국제 규범인 경우에 허용된다.
2.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사”라는 직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3.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된다.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나.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는 회원 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 1) 외국 회계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2) 공인회계사 연수, 3) 감사 기법 전수, 그리고 4) 정보 교환.

다. 건축 서비스 (CPC 8671)

영국 법에 따라 영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인은 정규 3개 건축사 시험과목 중 다음의 2개 과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시험에만 합격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건축설계 I, 그리고 2) 건축설계 II.

라. 통신 서비스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된다.¹

¹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및 임대회선의 단순 재판매는 제외된다)